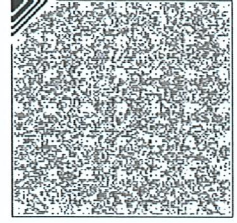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 
(경유)

제목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

2024년 **의료급여** 제도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**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**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하 지회 및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보도자료 1부
- 2. 참고자료 1부. 끝.

접수	일자	2024	결재·공람	관장	김대환
	시간	-02-20		사무국장	김대환
	번호	1911		부장	김대환
	처리과	가족지원팀		팀장	김대환
	담당자	김대환			

보건복지



주무관 **고대환** 장애인정책과 전결 2024. 2. 14.  
장 **최경일**

협조자

시행 장애인정책과-978 (2024. 2. 1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10동

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293

팩스번호 044-202-3960

/ [asraichoa@korea.kr](mailto:asraichoa@korea.kr)

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

(목적)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

선정기준

○ (소득·재산 기준) 소득인정액\*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가구

\*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○ (부양의무자 기준)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<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>

(단위 : 원 / 월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
의료급여 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	891,378	1,473,044	1,885,863	2,291,965	2,678,294	3,047,348

최저보장수준

○ (급여비용)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

○ (본인부담) 수급자 종별(1·2종), 입원·외래 여부,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담

<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>

구분		1차(의원)	2차(병원 종합병원)	3차(지정병원)	약국
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	입원	10%	10%	10%	-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\*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%